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18 _ 2014년 11월

이 사람의 향기 |

기초자치단체 인권센터의 전망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센터 성현정 소장>

포커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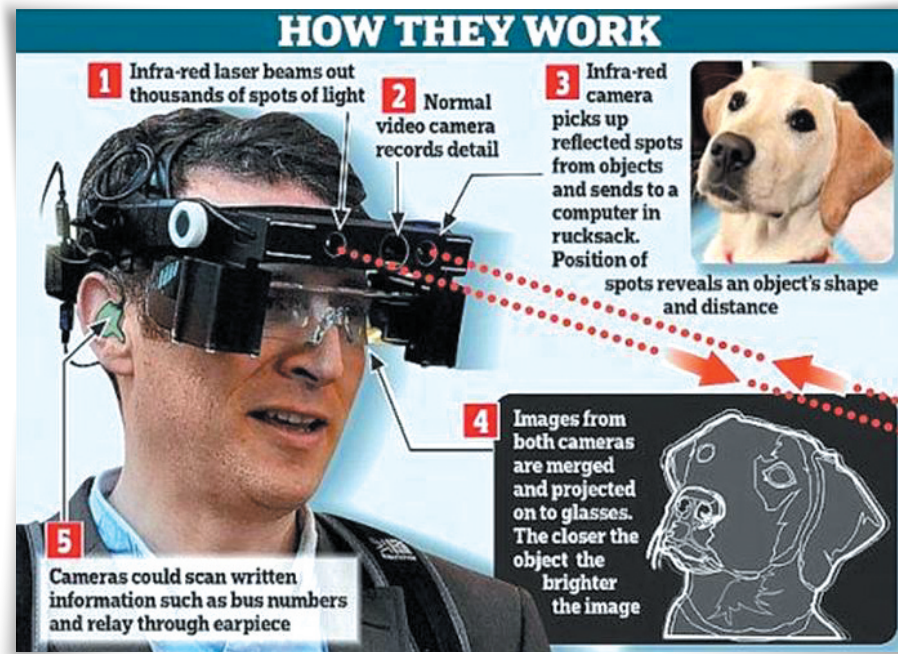
장애인정책의 주류화에 대한 소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활동의 성과와 과제

13년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

칼럼 |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지예산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임상신경과학과, 왕립시각장애인협회(RNIB)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력보완용 ‘스마트 글래스’가 2016년 시판 예정이어서 시각장애인과 부분시력 손실인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글래스의 작동원리는 이렇다. 비디오카메라가 전방에서 확보한 시야를 내장 컴퓨터가 인식해 이를 집안렌즈의 투명 전자 디스플레이로 전송시켜 인근 지역 사람과 사물에 대한 3차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길이 꺾어지거나 테이블, 의자 등 예상치 못했던 보행 장애물을 지팡이나 주변 사람 도움 없이 훨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어두운 밤길에 약한 야맹증 환자와 같은 부분적으로 시력이 손실된 인구에게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¹⁾

CONTENTS

	이미지 단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
02	편집자 편지	장애인정책 전망과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04	칼럼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지예산
08	의정토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단상
10	이 사람의 향기	기초자치단체 인권센터의 전망
17	포커스 01	장애인정책의 주류화에 대한 소고
23	포커스 0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활동의 성과와 과제
30	포커스 03	13년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
36	서평	장애 인권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
38	씨네평론	두뇌 개발로 신체의 손상이 치유된다면? —〈루시(LUCY)〉

1) 내용 출처 : 서울신문,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04601003>

장애인정책 전망과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권리협약) 한국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제출한 첫 번째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첫 번째 심의는 권리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방향과 계획, 이행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이후 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을 국내현안에 적용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후 권리협약의 이행 및 정기보고서의 작성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10월 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공개에 앞서 당사국에 미리 공개하여 일반 공개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는 당사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일반 공개된 최종견해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방적 권고가 아니라 당사국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당사국의 이행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중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에 대해 의료적 모델을 나타내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여 동법을 협약이 지지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의 장애인정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권고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변화는 장애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에 따른 해법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에 있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

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권리협약 전문 마항)과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권리협약 제1조 목적)”는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있어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문제 의 원인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손상에 그 원인과 기준, 대상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손상에 의한 개인의 사회 부적응의 문제로 보고 그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재활치료 및 훈련, 사회적응 및 복귀에 장애인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협약의 장애와 장애인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에 대한 태도와 환경적인 장벽으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와 사회의 참여 등 보편적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전에도 국내 장애인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정부의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번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들을 이행하여 그 결과를 2019년 다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과 비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2014년 11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이석구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지예산

글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¹⁾

프랑스의 후기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은 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려낸 그의 최대 역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7, 유화, 141× 376 cm)〉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이념과 지향은 모든 제도나 정책의 뿌리를 이룬다. 역으로 제도나 정책이 전제하는 가치와 이념은 인간의 존재 형태를 규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장애정책은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낼 것인가?

장애인은 어떤 존재인가

은폐. 1970~80년대 서울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간혹 길모퉁이에서 좌판에 앉아 자선을 구하는 걸인 중 몇몇이 장애인이었던 것도 같다.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리라.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도시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로 뒤덮으며 장애인을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었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던 개발제일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었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교 김순석씨의 유서 중에서)

과장.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 장애인이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외침은 장애인의 존재 선언이었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많은 장애인들을 거리로 불러냈다. 그러나 이동·접근권에 대한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시내의 턱이나 계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보호대도 없는 가파른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가 덧붙여졌을 뿐이다. 이제 장애인은 일행과 떨어져(!) 후미진 경사로를 오르거나, 위험천만한(!) 휠체어리프트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음에 쏟아지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동정 혹은 멸시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장애는 곧 무능력이라는 낙인이 뚜렷이 부여되었다. 2001년 전철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추락하며 또 한 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는다. 분리는 억압이고 차별이다(separate not equal).

통합.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는 단차 없는 출입구, 자동문과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임산부나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 짐가방을 든 성인 등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애인이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아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분리되기도 않는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이용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통해 우리는 통합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다.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고 분리하는 우리 사회가 문제였음이 드러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우리는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게 된다. 비로소 장애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을 보게 된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국가 정책

우리나라 장애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우리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이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을 통한 통합의 실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제3조 일반원칙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기회균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

¹⁾ 이 글은 서울시복지재단 웹진천만다행 10월호에 게재된 원고로 재단의 동의 하에 중복 게재합니다.

리의 현실은 이런 이념, 원칙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인구는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전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질병부담 연구는 전 인구의 15% 혹은 19%가 장애인이라고 추산한다. 그럼에도 2014년 우리 중앙정부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4%에 불과하다. 예산이 국가의 정책기조에 대한 수치적 표현이라 할 때, 우리 국가정책은 사실상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책에서 장애인은 배제된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70%이상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다. 교육, 노동, 교통, 주거, 문화 등 기본적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0.54%에 불과한 장애인예산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예산으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의 한 부서에 집중된다. 이로써 장애인은 세금으로 부양해야 할 잉여적 존재로 전락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99%가 넘는 일반예산의 혜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온다(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의 장애인 공급률이 비장애인공급률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이 수혜자로 선정되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6배 어렵다는 것이다. 서해정 외 2013,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I)> 한국장애인개발원).

우리의 사회정책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분리를 극복하고, 평등과 참여에 기초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도 장애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애주류화 전략은 모든 사회정책의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비장애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기존 사회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제사회도 세계적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모든 개발에 장애이슈를 포괄하는 장애주류화 전략(Mainstreaming disability in the development agenda)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8월, 장애인단체들이 중심이 된 ‘전국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추진연대’가 출범했다. 장애인지예산은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

이 장애인/비장애인 간에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분구조와 규칙을 적용한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장애주류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도구가 될 장애인지예산의 제도화는 성인지예산제도로부터 시사받은 바 크지만, 장애유형의 다양성이나 분리통계의 부족 등 많은 제약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분리를 넘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진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연대의 슬로건처럼 ‘장애인도 시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단상

얼마 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 무 이행현황’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산하 38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19억 6800만원의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말이 부담금이지 일종의 벌금이다. 공공기관 조차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지불을 택하는 실정이니, 민간기업은 말해 무엇하랴.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흔히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환경의 정비, 비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은 장애인고용문제 있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모두 부담감을 느끼는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은 왜일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발전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구태여 ‘인권’이나 ‘복지’를 따지지 않아도 말이다.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단순히 삶을 연명케 하는 시혜적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고개를 돌리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소득원(경제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가가 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시 공무원 정원의 6%로 높이는 조례를 만들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지 않으면 법률을 통해 강제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장애인고용정책 관련 발언을 읽으면서 반가우면서도 한편 씩씩한 이유다. 발언 내용처럼 고용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고만규 위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또 산하기관도 역시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장애인들의 고용을 좀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서울시가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을 서울시가 몇 % 정도 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는 4.3% 수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3.0%를 넘어 6.0%까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만규 위원 일단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일단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는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장애인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아침에도 간담회 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저로 인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꼭 갖춰져 있는 식당만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식당을 못 가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신들이 선호하는 음식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아홉 명의 위원님들이 전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에 장애인 직원이 한 명 있으면 그 직원으로 인해서 조직원 40명, 50명이 결국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고용만 한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장애인들이 고용하니까 부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라고 여쭙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조례로만 명시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함께 있어 줘야 되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할 때 장애인무료 직업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상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늘 하는 소리가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늘 얘기를 했고, (중략) 서울시에서 장애인 고용을 높이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했는데 그 장애인이, 그 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공무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인권센터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김익수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센터 성현정 소장

이번 소식지 인터뷰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센터 성현정 소장(사진 좌측에서 4번째)이다. 현재 광역시도로부터 위탁운영되는 인권센터는 3곳이다(서울, 경기, 전남). 여기에 보건복지부 인권침해예방센터를 더해도 4곳에 불과하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기구가 4곳에 불과하니, 기초단체는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227개 기초단체중 2곳만이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그 중 하나가 울산북구 인권센터다. 기초단체 인권센터의 선례가 없다보니 신생단체의 위상이 곧 그 전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구센터(이하 '센터')를 주목하는 이유다. 기초단체 인권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성현정 소장을 만나보았다.

Q 인터뷰 수락해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현정 소장님이 울산을 중심으로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해왔던 일이 무엇인지 깨알자랑을 하라는 건가요?(웃음) 2005년 1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해 2006년부터 울산광역시비 지원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진행하였고 자립생활센터를 시작하면서 만난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2005년 5월에 동그라미장애인학교를 만들어 기초한글, 수학, 검정고시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자립생활센터를 시작하면서 활동보조만큼이나 중요한 서비스가 보조기구라는 생각이 들어 2009년부터 보조기구의 방문수리와 렌탈사업을 시작했고 시설이나 집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체험홈에 들어오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아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고민이 되어 울산광역시와 주택공사에 요구하여 자립홈 남녀 각 1곳씩을 201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에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결과물들을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전시도 하고 장애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2010년 시화전을 시작으로 동그라미장애인문화제라 하는 행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권포럼이 지향하는 방향이 좋아 2011년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을 또 만들었지요. 제 욕심도 장난이 아니지요(웃음) 그래서 4년째 울산포럼 대표를 맡고 있고 또 포럼부설로 2013년에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북구장애인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Q 예, 울산이라 하면 대규모 공업단지가 먼저 연상될 텐데요. 울산의 장애 관련 현황은 어떤가요? 또 울산이라는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랄까 문제점도 좋구요

울산 등록 장애인은 110만 인구 중 약4만9천명. 5%에도 밀도는 수준인데요 2012년까지만 해도 5만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2천명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보면 어떻게 된건지 잘모르겠어요. 그 많은 장애인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암튼 재밌는 수치인 것 같은데 어쨌든 17대 광역·특별·자치시도 중 장애인구가 3번째로 적은 수준이고요 생활시설은 8개, 특수학교 4개, 장애인단체도 15개 정도로 유형별 5개, 장총 및 그 외 법인단체가 89개 정도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요.

울산은 도농공이 혼합된 도시로 특별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중

심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기반으로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산재장애인이 많은 지역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산재장애인들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로 머물러 있거나 그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수입이 안정돼 있다 보니 집과 병원, 장애인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높고 현금이 많은 곳이긴 하나 타지역 보다 문화나 복지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기에 참 어려운 곳이지요.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들의 의식 있는 조직 활동이나 운동도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구별로도 중복적으로 설립되는 자립생활센터도 울산에서는 2개가 전부입니다.

Q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센터 운영 이전에 울산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이나 차별 모니터링 등 선행 사업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요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고 울산포럼 대표를 하면서 ‘울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활동을 하면서 조례에서의 장애인의 차별 모니터링 결과를 들고 직접 지자체를 돌며 개정추구를 하여 작년말 현재 88%의 차별조항 개정을 이루어냈고, 기초지자체에 자립생활조례, 출산금지원조례,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장애인인권보장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구지역에서는 지역의원들과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와 보행권에 대한 어려움을 알려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 아, 그런 성과들이 있었군요. 이번엔 센터설립관련 진행과정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부서 인권정책 수립과 센터 설립까지 추진하는 지자체는 드물더군요. 울산은 어땠나요?

다른 광역시도나 울산에 있는 기초 지자체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될 센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설치 조항이 없는 조례는 사실상 거의 행정 편의주의 조례이고, 조례에 의해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조례보다는 뭔가 제대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북구는 청장과 구의원들이 진보정당 소속이라 다른 지역보다 앞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인권 쪽에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서 허울뿐인 ‘장애인권보장조례’가 아닌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들과 소통을 진행했지요. 그렇게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북구에 있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사무국장이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루는 자기가 생각해도 우스운 행동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저 혼자만 청장님 짝사랑 한 겁니까? 저희는 구청장님이 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는데 청장님은 우리를 위해 센터 예산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구의원과 저와 국장이 공식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사무국장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실무적인 일을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Q 드디어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소장님의 역점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북구 지역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어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식개선 캠페인, 더 나가서 장애인인권캠페인을 실시했고, 지역에 있는 학교, 장애인단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상담은 기본입니다.

둘째로 현장 활동가 양성이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인권교육 강사양성을 선택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을 tv를 비롯한 언론에서만 보기 때문에 장애인을 실제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서 내 이야기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장애인은 이런 사람들이고 장애인이 차별받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고 결국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나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장애인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중점 진행했고요 이 결과로 5명의 장애인당사자 강사가 학교나 복지관, 시설을 중심으로 아주 열심히 강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스스로도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차별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

서 제가 센터를 만들면서 굉장히 좀 무모한 일을 하는거죠. 울산지역에는 솔직히 연구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인권지표를 개발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 10월달인가요? 그때부터 장애인 인권지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권이 워낙 범위가 커서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교육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1년간 교육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봤고 두 차례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또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설문을 만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 지표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확신은 없어요, 단지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이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정도 기준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Q 예, 인권평가 지표개발이 기초단체에서 추진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질문은 센터 위탁선정 기준입니다. 타지자체에 참고가 될 듯 하고, 특히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사업은 위탁선정에서 적절한 단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센터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그 조직이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및 차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인권과 복지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듯 합니다. 장애인을 계속 복지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들 가운데에도 왕왕 장애인권을 장애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를 위탁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장애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직원들을 뽑아봐도 사실은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인권에 대해 무지하면 기실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단체를 뽑게 되면 그 단체 대표의 이력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단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핵심사업들을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조직들이 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Q 센터 운영과 관련해, 특히 인재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인건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가적인 노력도 요구될 거 같은데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

떠신지요?

그렇죠? 일을 하려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산도 인력난이 되게 심해요. 당사자 중심으로 인재를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사람을 키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커요. 제가 장애인권 강사를 당사자로 교육하는 것도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교육 10번 시킨다고 해서 강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주 모여서 스터디하고 각자가 준비해 온 자료를 시연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 오면서 역량강화를 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강사가 되어있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저는 모든 직원들이 인권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공부도 해야지요. 상담도 지역의 상담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Q 울산에서도 거주시설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위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센터운영 당사자로서 고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미 언론에 여러 가지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를 하면 일단 복구에, 그러니깐 한 3년전인가요. 그때 지역별로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할 때 시설입소자 중에 남학생들이 어떤 성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게 되었고요 그 가해자라는 아이가,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아이는 지금도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설 인권지킴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하고도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나름대로 좀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어쨌면 그 시설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뭐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가해자로 분류되는 아이의 경우 청각장애와 약간의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그것만큼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Q 성소장님 본인도 당사자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을 겪으실 텐데요. 울산에서 이런 건 시급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많을텐데요, 웃음)중 한가지만 꼽으신다면?

울산에서 좀 개선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행권’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인도로 가야되는 상황들인데 차도로 썩썩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걸어다녀도 이 보도블럭이 되게 많이 경사가 저 있다든지 보도블럭들이 균형이 안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걸어가면서 잘 넘어집니다. 턱이 있어서 걸리기도 하고 또 보도블럭들이 울퉁불퉁해서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 보행권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보행권이 울산에선 아주 많이 취약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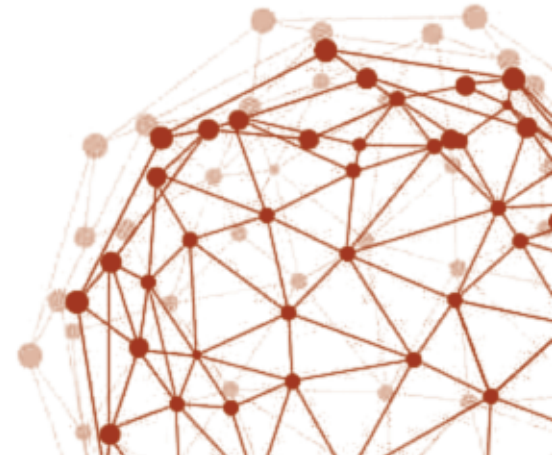
Q 끝으로 소장님이 생각하는 인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말할 때 반드시 말씀하시는 가치나 기초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소장님의 인권철학이랄까요?

저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햇빛 또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햇빛과 공기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건물을 만든다면 그 건물에 갇혀진 사람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권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구요. 공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상이 없는데 공기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오염시키는 사람 따로고 오염된 공기 마시는 사람 따로라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권을 설명할 때 ‘다 함께 행복한 길’이 바로 인권존중이라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 제목이 ‘다 함께 행복해요’입니다. 장애인권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항상 장애가 무엇인지, 장애인이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해요. 저는 개개인이 뭔가 잘못해서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전반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건물들, 제도들 법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장애인권 보장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하에 우리가 건물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들에 대해서 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지역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정책의 주류화에 대한 소고



이석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들어가는 글

지난 9월 17일에서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¹⁾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의 1차 국가보고서²⁾ 심의³⁾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⁴⁾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축하하면서 국내 장애인 관련 법령들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1) 2006년 12월 13일 채택, 2008년, 12월 2일 278회 정기국회에서 비준, 2008년 12월 11일 유엔사무총장에 비준서 기탁(44번째로 비준), 2009년 1월 10일 발효, 2011년 7월 1차보고서 제출, 2014년 9월 1차보고서 심의.
2)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비준후 2년 이내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 35조.
3)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차 권리위원회에서 9월 17~18일 이틀간 진행되었음. 심의에는 정부대표와 엔지오 등 한국에서 70여명이 참여하였음.
4) 장애인권리협약 제34조에 의해 설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정부의 보고서 심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최종견해 채택, 장애인권리협약 해석 및 가이드라인 논평 채택.

실제로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5월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등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만 해도 9개⁵⁾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등에관한법률』과 같이 장애인을 포함하는 법률 4개⁶⁾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고용, 자립생활, 소득, 주거 등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산의 경우에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 14억여원⁷⁾에서 2014년 중앙정부의 장애인관련 예산이 1조9천억원⁸⁾으로 1,000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양적인 발전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은 고실업 저임금에 따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시스템에서의 소외와 배제로 인한 저학력, 자립생활지원의 부족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의 어려움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문제를 손상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비장애인중심의 문화와 규범, 제도, 조직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장애인정책의 지향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의 사회부적응을 문제시하는 현 장애인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리된 법, 정책, 예산과 사회통합의 모순

현 장애인관련 법률은 적지 않은 조항들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에 있어서도 장애정도, 소득수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소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기본적 권리의 보편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가 헌법 및 일반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관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소수의 장애인관련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이 장애인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정책의 집행과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⁹⁾

이처럼 현재의 장애인관련 법과 정책은 철저히 분리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관련 정책, 장애인관련 예산 등이 분리되면서, 일반 정책안에서 장애인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범 정부차원의 장애인관련 정책의 조정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도 관련부처들이 모여 장애인관련 정책에 관한 부처별 사업 및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뿐 각 부처별 일반사업에 있어서의 장애인관련 내용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문제는 특정부처 또는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될 뿐 일반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 장애인관련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정책은 장애인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배려가 필요한, 특별하게 관리해야하는 주류정책의 부문정책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률과 제도, 정책에서 분리된 장애인관련 법과 제도, 정책의 목표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점은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등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7) 지난30년간(1981~2010년)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분석-재활복지 Vol. 14, No. 2, 2010. 6. 115-140
8) 2014년도 중앙정부 장애인정책사업 예산
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오프닝 세션에서 발표한 NGO발표문 중 일부. NGO는 한국의 장애정책이 일반정책과 장애정책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부정책에서 장애인이 배제 또는 분리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함.

분리정책의 효과성?

정부의 모든 정책은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있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집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 집단이 갖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위치들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집단들은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류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는 집단, 주류와는 다른 무언가 문제가 있는 집단, 별도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낙인을 강화하게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사회에서 별도의 특별한 대우 또는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서 인식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대상 집단의 요구만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교육, 노동, 문화, 주거 등 특화된 지원에 머물게 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은 낮은 소득, 낮은 임금, 낮은 취업률¹⁰⁾, 낮은 교육률¹¹⁾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관련한 정책들이 수행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된 정책은 장애인집단의 낙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고 있다는 효과성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 나아진 측면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본다면 여전히 고용, 교육, 문화 등 전반적으로 그 간격은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암담한 실정에서 계속 분리된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이 가능할까요?

주류화를 상상하자!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정책은 역사상 일정정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통합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효과성 면에서도 제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류화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정부 및 공공 정책에 대한 수혜자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비장애인 수혜자의 15%가 장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정부 및 공공 정책에 장애인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가지는 가치와 규범을 전제한 장애인의 주류화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실상 비장애인 맞춤형 교육정책에 장애인을 끼워 넣는 형태의 주류화를 시행한다면 그 장애인은 오히려 분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이며 정서적으로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통합교육도 단지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주류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의 전환(transformation)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부 및 공공정책에서의 주류화를 지향하는 것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정책을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정책의 지향점은 주류화정책으로 하되, 정책의 목표달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각 대상 집단별 정책을 접목하는 형식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률 35.5%로 비장애인 취업률 60.3%로 비해 현저히 낮음.(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1) 무학 12.3%, 초등학교 33.0%, 중학교 18.4%, 고등학교 24.5%, 대학이상 11.8%로 초등학교 미만의 장애인이 전체 45.3%로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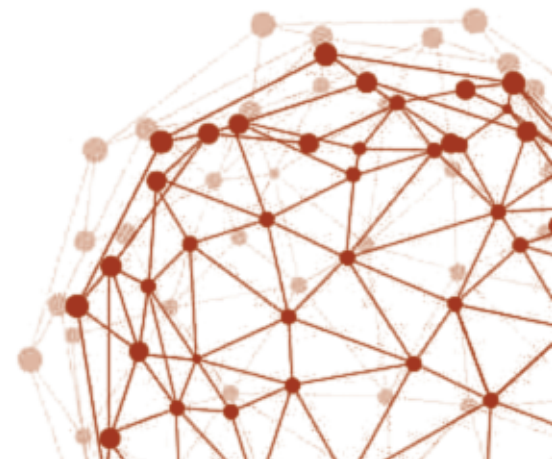
일례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정책 지향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적인 수단으로 접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에서 주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이 뒤엉켜있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성운동차원에서도 오랜 기간의 노력의 결과로써 성주류화를 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지만,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시키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정책은 상당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예산 분석 등의 수단을 통해 현재의 남성중심의 정책의 불평등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및 공무원의 책임을 부과했다는 것부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애계에서 주류화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은 듯합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삶이 너무도 열악해서 일 것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획기적인 전환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가 주류화에 대한 상상일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활동의 성과와 과제



김강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들어가며

지금 장애계는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대한민국 심의의 결과 채택된 유엔의 최종 견해로 인해 분위기가 뜨겁다.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가 해결을 촉구했던 여러 문제와 열망했던 소망들이 위원회의 견해에 대폭 담겨졌기 때문이다. 장애를 ‘의료적인 손상’이라고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권고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논의들에 구체적인 힘을 실어 주었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염전노예 사건’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인권적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문제 등의 심각한 국내의 인권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인정하고 해결을 촉구하였다는 점 등은 더 이상 장애인 인권 문제가 감추거나 눈감아 버릴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최종견해가 특별히 감격스러운 이유는, 유엔이 ‘우리’의 목소리, 우리 NGO와 DPO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폭 반영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외쳐 봐도 대답이 없는 장애인 인권 운동사를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갖는 의미

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지난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2008년 이 협약을 승인하여 2009년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은 장애가 무엇인지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라고 하여 장애가 개인이 가진 신체적 손상 문제라는 인식에서 오히려 사회적 인식과 사회 환경의 문제라는 점을 반영하는 등 철저하게 인권에 기반한 내용으로 국내법에 비하여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 유엔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와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한 조항인 제25조 마항을 유보(이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법 732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하여 국내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약 위반으로 개인이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는 없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처벌조항은 없지만 협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 국가는 국제사회 앞에서 준수하겠다고 선포한 장애인 권리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진행되는 심의와 권고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협약에는 국내법에 비하여 진전된 내용들이 대폭 담겨 있기 때문에 국내 장애인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협약을 반영한다면 한국의 장애인 인권은 한층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의 심의에 있어 NGO의 역할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4조에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최대 18명의 '장애인 권리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최초 2년 안에 협약의 이행상황과 진전사항에 관하여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고 이후 최소한 4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NGO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엔에서는 국가보고서와는 별도로 NGO보고서를 받아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NGO는 유엔이 알기 어려운 국내의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주로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형식적인 법률과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반해 NGO의 보고서는 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협약의 미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국가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으로서의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를 상대로 권고를 내리기 위하여 NGO보고서에 큰 비중을 둔다.

NGO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 뿐만 아니라 협약의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권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개별 위원들을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를 상대로 '이런 내용으로 결의해 달라', '이러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NGO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당사자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현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유엔에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고 있다.

한국 NGO연대의 활동

한국의 NGO들은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함께 모여 연대체를 결성했다. 유엔에 등록된 민간 단체인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를 중심으로 2013년 4월 19일 30개의 장애인단체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가 출범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을 분야별로 배분하여 각기 담당 그룹을 정하여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필자가 참여하였던 그룹은 6개의 그룹 중 1그룹으로 10명의 구성원들이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1조~5조, 인식제고에 해당하는 제8조,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및 31조~33조를 담당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해야 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심 의 과정의 매커니즘과 효과적인 NGO활동을 위한 전략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NGO연대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각 워킹그룹별 소모임 등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갔다. 그리고 보고서의 질적 수준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통계 및 자료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했다. 또 유엔에 한국의 모든 이슈들을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항별로 핵심적인 이슈들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들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NGO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갔는데 보고서의 형식은 1)문제 제기할 이슈의 간략한 내용, 2)이슈와 관련된 통계 및 사례, 3)정부에 대한 권고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보

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NGO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는데 한국 담당 보고관인 태국 국적의 몬티안 분탄 위원과 케냐 출신의 여성위원인 예다 마이나 위원이 한국을 찾아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 국제장애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IDA)의 인권담당관 빅토리아 리(Victoria Lee)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 빅토리아는 연대 결성의 초기 과정부부터 최종 국가심의회까지 훌륭한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보고서 작성은 거의 2년여의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심의가 있던 달인 9월 초순 완성되어 UN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NGO연대의 제네바 현지 활동

NGO의 역할은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NGO연대도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 심의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폈다. NGO가 이번에 UN에서 직접 활동했던 것은 크게 ‘사이드 이벤트’와 ‘이슈 로비’라고 할 수 있다. 사이드 이벤트는 정부심의 직전에 NGO에게 주어지는 발표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 1시간의 시간이 배정되며 이 시간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함축하여 발표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시간은 극히 짧았다고 기억된다.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6명의 NGO 참가자가 이슈를 발표하였고 이어 장애인권리위원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NGO 대표단은 △장애인 정책의 주류화 문제 △장애인관련법의 실효성 문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의료적 관점으로만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국내 장애인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 △장애인등급제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문제 △성년후견인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의 고용 및 소득보장 문제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제약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대책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문제 △장애인권리옹호기구의 필요성 △수화의 공식언어로의 인정 △탈 시설과 자립생활지원 △실질적인 통합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최종적인 핵심 이슈로 선정하여 위원들에게 발표하였다.

‘이슈 로비’란 개별적인 장애관련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 권리위원을 중심으로 개별 위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에 이런 내용을 꼭 질의해 달라.’ ‘이런 권고를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과정을 이야기 하는데, 미리 장애인권리협약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원들의 관심사와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여 심의 전부터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회의장에서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복도에서건 식당에서건 화장실에서건 말을

걸고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정부 답변 중 사실과 다르거나 통역의 오류 등으로 인해 위원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고 입장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심의회와 최종견해 채택

정부심의회에서는 정부 대표단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등에서 참가하여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협약의 중요성과 비중을 실감케 했고 민간에서는 34명의 NGO 참가자와 지원인력, 학생 등 총 56명이 참가 하여 15일 뉴질랜드 심의, 16일 멕시코 심의를 참관하고 17일 사이드 이벤트에 이어 18일까지 이어진 정부 심의에 참여했다.

정부 심의에서는, 정부대표단의 기조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기조발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면서, 국내 장애인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의 제정, 범정부적인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제 실시, 정신건강증진법안 발의, 장애인 연금 확대, 의무고용제도 시행, 입법과 사법기관에서의 장애인 진출의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법,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실시, 한국 수어법 발의,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어진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유보조항 철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장애의 정의, 장애등급제, 탈시설 문제,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성년후견제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강제불입, 고용 및 소득보장 등에 관하여 NGO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특히 NGO에서 이슈를 제기했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위원들이 충격을 표명하며 ‘협약의 완전한 위반이다’며 구체적인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권고 했다.

정부는 위원들의 질문 중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거나 구성상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고, 장애인등급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제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순간에 폐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2017년 말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자립생활 관련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각종 소득보장 정책이 탈 시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차별이 시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차별구제를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유보 조항 중 25조 마항의 철회에 대해서는 상법 732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상황을 보아 가며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으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내의 차별시정 기구를 통한 권리보장이 미흡한 경우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사실상 비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시내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2016년까지 41.5%로 끌어 올릴 계획이나,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장애인의 안전이 우선으로 지난해 8월 말 연구용역을 마치고 향후 시범 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장애 여성이 과거 교육에서 배제되었으나 현재는 비장애인, 장애 남성과 동일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며 “장애여아의 교육이 장애남아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심의와 정부 보고서, 민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3일 유엔의 최종견해가 채택되어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다. 최종 견해에서는 △인권예 기반 하지 않고 의료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 판정 시스템, △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장애 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정신장애인을 자유를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등을 지적하였고,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탈 시설화 정책을 마련할 것,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 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포함한 착취, 폭력, 학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의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하여 ‘염전노예’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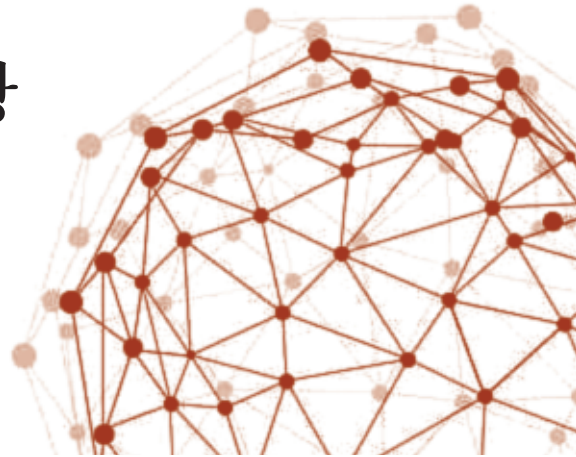
향후 NGO의 역할과 과제

위와 같이 이번 심의에 있어 NGO의 역할은 컸다. 그리고 이러한 NGO의 목소리, 즉 우리의 목소리를 유엔이 인정하고 적극 반영한 점은 그동안 차별과 배제 속에서 무시당해 왔던 우리의 장애 운동사를 돌아볼 때도 감격적인 일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엄연한 법률이며 처벌조항이나 제제수단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뿐이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도의적 책임이나 존중해야 할 의무 정도가 아니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협약을 법률로 인정했고 세계 앞에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 견해가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답하였다고 하니 과연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취해야 할 태도인지 의문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에게 많은 배울 점을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는 훌륭한 수단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계를 제외한 사회 일반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에게조차 장애인권리협약과 최종 견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NGO는 활발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펴야 할 것이고 협약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약을 국내 상황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와 국내적 적용은 장애계 전체의 큰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정부 심의는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최초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 불과하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게 늦어도 2019년 1월 11일까지 정기 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견해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NGO는 정부의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다시금 유엔에 한국의 장애인 현실을 알려 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13년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



이강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국현황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개의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7개의 지자체는 조사 중에 있다. 조사가 완료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기재하였다.

장애인 복지법 25조(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령 16조를 보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매년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표1. 10개 광역지자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예산

(단위 : 천원)

광역시도	2013	2014
부산	720	1,790
대구	30,000	58,500
광주	8,200	8,200
세종	예산편성 없음	예산편성 없음
경기	예산편성 없음	예산편성 없음
강원	예산편성 없음	예산편성 없음
충북	예산편성 없음	예산편성 없음
전북	1,090	6,400
전남	15,000	15,000
경남	39,459	41,046

조사가 완료된 10개의 광역지자체 중 대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 경기, 충북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았다. 예산을 알아보면서 시,도비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예산 항목의 존재 여부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없다고 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의 경우 교육부 예산에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인식개선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래 표2에는 2013년도 광역지자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주체를 알아보았다. 대구와 세종시의 경우 지자체내에서 직접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전남은 위탁업체만을 선정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외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자체내에서 직접 시행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를 병행하고 있었다.

표2. 2013년도 10개 광역지자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 주체

광역시도	지자체내 직접시행	지자체내 직접시행
부산	O(부산시)	O(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	O(대구시)	-
광주	O(공무원교육원)	O(광주장애인인권센터,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세종	O(세종시)	-
경기	-	-
강원	-	-
충북	O(충청북도 도청)	-
전북	O(전라북도 도청)	O(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 사업진행)
전남	-	O(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	O(경상남도 도청)	O(장애인단체총연합회)

표3. 2013년도 10개 광역지자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횟수

광역시도	대상	2013
부산	본청과 산하공기관	1회
	일반시민	약 132회
대구	본청과 산하공기관	11회
	일반시민	-
광주	본청과 산하공기관	10회
	일반시민	180회
세종	본청과 산하공기관	1회
	일반시민	2회
경기	본청과 산하공기관	-
	일반시민	-
강원	본청과 산하공기관	-
	일반시민	-
충북	본청과 산하공기관	1회
	일반시민	-
전북	본청과 산하공기관	1,000회
	일반시민	100회
전남	본청과 산하공기관	10회
	일반시민	42회
경남	본청과 산하공기관	8회
	일반시민	1회

표 3은 2013년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횟수를 공무원 대상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대구, 부산, 경남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식개선교육이 월등히 많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1,000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11, 12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 결과 교육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 전남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일반 시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를 조사하면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없는 관계로 시, 도마다 교육의 횟수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표4. 2013년도 10개 광역지자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

광역시도	시청각	강의	체험	인터넷강의	두가지 이상 병행	기타
부산	1회	-	-	-	시청각/강의 132회	-
대구	2회	-	-	-	시청각/강의 9회	-
광주		166회	24회	-	-	-
세종		3회				
경기	-	-	-	-	-	-
강원	-	-	-	-	-	-
충북	1회	-	-	-	-	-
전북	1회	-	100회	-	-	-
전남	-	52회				
경남	1회	10회	2회	-	강의/체험 2회	-
합계	6회	231회	126회	-	143회	-

표4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표이다. 표면적으로는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두 가지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고, 체험, 시청각 순으로 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다. 표를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한두 가지 방법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만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각 교육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 한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인식개선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5. 2013년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 주제에 대한 조사

광역시도	장애인 인권	인권 일반	장애인 차별금지	시청각	기타
부산	24	6	-	3	-
대구	-	-	4	6	-
광주	77	41	11	14	13
세종	1	-	1	-	1
경기	-	-	-	-	-
강원	-	-	-	-	-
충북	-	-	1	11	-
전북	37	2	11	2	-
전남	11	2	5	-	-
경남	-	-	-	-	-
합계	150	51	33	45	14

표5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 주제에 대한 조사표이다. 가장 많은 교육 주제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주제는 인권 일반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 기타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에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교육,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이 포함되었다.

아직까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인 인권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은 여전히 기초수준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성년후견인제도와 같은 그해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는 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도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 세분화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제대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식개선교육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는 2013년도 예산은 없었지만 2012,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격년제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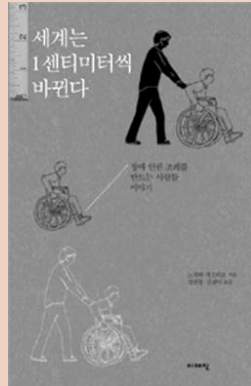
횟수도 각 지자체마다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몇 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지자체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육방법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선호하는 몇 가지 방법만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매년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주제 역시 기초적인 인권과 장애인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주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기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 심화 과정이 있는 주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장애 인권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

글 정지원 모니터단원



일본 혼슈 남동단의 지바현(千葉縣), 그룹홈이나 간병인 등이 인구에 비해 가장 적은 현 중 하나로 복지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민간과 공무원 합심으로 장애인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생생히 그린 책이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이다. 조례 제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는 수천에 이른다.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태도 변화가 구체화된 산물이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대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안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바로 그해 지바 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도모토 아키코는 지바현을 복지도시로 개혁하고자 어린이·장애인·고령자 등 종적으로 구분된 행정을 거부하고 횡단형 복지를 표방했다. 또 정책입안 단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회의를 열어 각종 복지정책을 결정토록 했다. 이러한 민관합동 과정을 ‘지바방식’이라 불렀다.

아키코 지사는 관공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회의도 낮에 일하는 민간위원들을 고려해 저녁에 개최했다. 현민을 위한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예컨대 ‘지바현 장애인계획’ 수립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민간위원으로 참가했는데, 현장 직원들은 위원이 질문을 하면 설명은 했지만 논의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또 회의록이나 모임에 쓰일 자료를 작성하는 등 직원의 역할을 스텝에 국한함으로써 민간인 당사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심지어 다케바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적장애인위원이 좀처럼 논의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회의 며칠 전에 지적장애인위원이 살고 있는 그룹홈에 찾아가 일대일로 예습을 하는 정성을 보였다.

‘지바 현 장애인계획(2004년)’에서 수립된 장애인권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도모토 지사는 ‘조례만들기 연구회’를 만들고 장애아의 아버지이자 인권침해 현장을 깊이 섭렵한 저자 노자와 가즈히로를 위원장으로 삼고, 다양한 민간 위원들을 모집하였다. 장애인이나 복지와 거리가 먼 일반 사회나 시장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관광호텔 영업사원, 여행사 직원, 제약회사 임원, 부동산 회사 사장 등 다양한 민간인을 연구회 위원으로 적극 영입함으로써 장애인권의 문제를 사회전체로 퍼지도록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2004년 만들어진 ‘지바현 장애인권조례 연구회’는 2007년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800건이 넘는 장애차별사례를 수집했다. 수집된 사례는 교육, 복지, 의료, 노동,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건물과 교통, 부동산 거래, 정보제공 등 전문야를 망라했다. 연구회는 명백한 차별뿐만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차별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사례들을 가감없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조례 문구 하나하나에 반영하였다.

연구회는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차별과 물이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바현 내 32곳에서 타운미팅¹⁾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바현 공무원들은 자료준비, 조례제정취지 설명을 맡았고, 타운미팅 후속조치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타지역에서 더 재미있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단체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련의 실천들을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 놀랍다.

작가는 조례제정을 통해 획득한 것은 ‘신뢰’라고 대답하고 있다. 동시대 동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조례의 가장 큰 성과가 되었다. 지바현의 민·관협치로 일궈낸 장애인권조례 제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행정에 의한 탁상공론이 아닌 공동체적 실천행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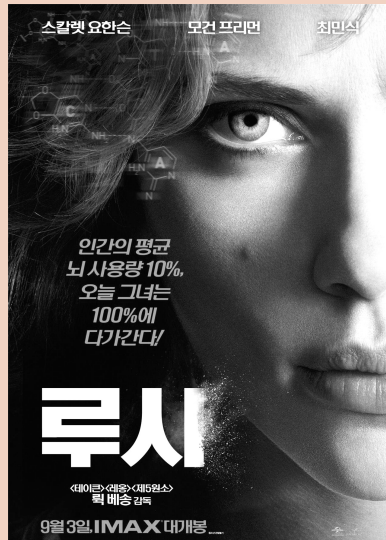
저서명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 출판사 이매진(2011)
 저자 노자와 가즈히로 지음 / 정선철, 김샘이 옮김

1) 조례 제정 취지를 홍보하는 주민대상의 설명회

두뇌 개발로 신체의 손상이 치유된다면?

영화 『루시(LUCY)』

글 김병민 모니터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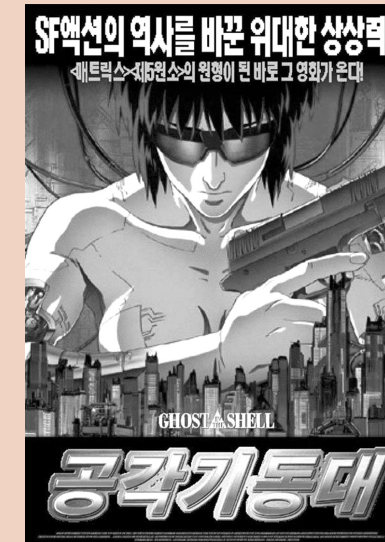
- 10%, 인간의 평균 뇌사용량
- 24%, 신체의 완벽한 통제
- 40%, 모든 상황의 제어 가능
- 62%, 타인의 행동을 컨트롤
- 100%, 한계를 뛰어넘는...¹⁾

영화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보는 즐거움 그 자체 때문이다. SF영화가 보여주는 미래사회의 신기한 풍경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화려한 액션은 우리 주말을 풍성하게 해준다. 영화 '제5원소'나 '레옹'으로 유명한 릭 베송 감독의 신작이라면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영화는 기대와는 달리 허무했다. 째짤한 기분도 들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여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납치돼 몸 속에 약물을 투입받고, 그 약물을 강제로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런데 사고로 이 약물이 주인공의 체내에 퍼지게 되고 그때부터 주인공의 신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 덕에 악당들도 물리치고,

위 뇌사용에 따른 능력치를 보면 변화는 신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뇌사용량 수치가 높아질수록 신체에서 정신으로 변화가 확대된다. 마블코믹스 영웅 수준의 신체능력, 사물을 조정하여 원격 연락할 뿐 아니라 타인의 사고를 엿보고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초능력?). 몇 천 페이지의 논문을 순식간에 읽고, 이해하는 것 째는 껌 씹기 수준(슈퍼컴퓨터?).

주인공이 변화해 갈수록 인간인지 괴물인지 안드로메다 성인인지 애매해졌다. 드디어 100%에 이르면 주인공 신체는 소멸되고(유체이탈?) 디지털 정보망에 상주하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그녀(한때는 그렇게 불렀다)는 손바닥에 올려놓은 USB 메모리에 있다.



예전에 일본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Ghost In The Shell, 1995)에서 두뇌 일부가 디지털화되고 감각기능을 비롯한 신체능력이 강화된 여주인공을 본적 있다. 그녀도 화려한 액션과 몸매를 뽐내며 한참 설치다가 인간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온라인 상의 디지털 인공지능 (Ghost)이 된다. 영화 결말부에 나오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옛된 소녀의 모습이 새로운 존재를 형상화하고 있다. 꼬마나 유에스비나...

2014년 릭 베송 감독의 상상력은 20년 전 공각기동대의 수비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심할까? 엔딩에서 주인공이 고작 USB에 담기는 게 너무나 허무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울트라 파워가 생겨도 궁극의 도달점이 육체소멸이라면 과연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영화의 아이디어처럼 두뇌의 잠재적 가능성이 인위적으로 발현되면 지체장애인의 손상도 치유될까? 그리고 그렇게 치유되고 능력이 확장되면 행복할까? 고작 유에스비에로 끝나는 운명이? 유에스비까지는 아니고 한 62%(타인의 행동을 컨트롤)에서 멈출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하는 지옥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좀 힘들고 불편해도 그냥 인간이 낫겠다.

1) 네이버 무비(<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7960>) 시놉시스에서 인용
 2)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국내 포스터에 상단에 "(제5원소)의 원형이 된 바로 그 영화가 온다"라는 문구가 있다. 실제로 릭 베송은 제5원소에서 루시에 이르기까지 공각기동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 하다.

생각해보니 화도 난다. 발전의 최종 목표가 몸의 소멸이라? 소멸의 목표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붓다·예수·공자....왜 이들을 성인이라 할까? 심신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추앙받는 건 아닐까? 그들도 육체를 구속으로 본 듯하다(해탈, 영혼 불멸, 출산을 통한 생명 연장)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가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은 아니다. 두뇌 향상의 지향점이 육백만불 사나이나 슈퍼지능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깨닫는 윤리적 각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록 성인의 육신은 소멸했을지라도 그들의 발자취와 깨달음이 우리 의식에 저장되고 끊임없이 환기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영화정보 루시(LUCY), 2014
 감독 릭 배송
 출연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 최민식



인터넷에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해가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 ● 웹 표준 ·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성 품질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 ● 웹 접근성(WA) 인증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성 진단 평가 실시



T.(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이권희)	T.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3층
부산 (대표:김호상)	T.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김 량)	T.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대전 (대표:안승서)	T.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성현정)	T.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49-7 새한빌딩 5층
경기 (대표:안미선)	T.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박광순)	T.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북 (대표:김미아)	T.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경남 (대표:문숙헌)	T.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제주 (대표:고현수)	T.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